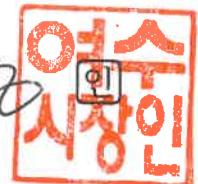
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2057호

붙임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57호

##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9”를 각각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 중 “다음과 같이”를 “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”로 하고, 같은 호 중 “○ 대행수수료 = 시간당 노임단가 × 검사대행 소요시간 × 현장조사에 따른 적용비율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○ 산정식 : 직접인건비 + 제경비 +기술료 = 업무대행 수수료(부가 가치세별도)

- 직접인건비: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분야 기술사에게 적용하는 시간당 노임단가(매년 1월1일 기준) × 소요시간
- 제경비: 직접인건비의 110%
- 기술료: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%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4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</b>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</p> <p>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</p> <p>② ~ ⑥ (생 약)</p>	<p><b>제34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</b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 <u>10</u>----- ----- ----- 2. --- <u>10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[별표 2]</b> 업무대행 수수료(제23조 관련)</p>	<p><b>[별표 2]</b> 업무대행 수수료(제23조 관련)</p>
<p>1. 업무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행수수료 = 시간당 노임</li> </ul>	<p>1. 업무대행 수수료는 <u>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</u>가 산방식으로 산출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단가 × 검사대행 소요시간 × 현장조사에 따른 적용비율	<p>○ 산정식 : <u>직접인건비 + 제경비 + 기술료 = 업무대행 수수료(부가가치세별도)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직접인건비</u>: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<u>직접인건비</u> 중 건설분야 기술사에게 적용하는 <u>시간당 노임단가(매년 1월 1일 기준) × 소요시간</u></li> <li>- <u>제경비</u>: <u>직접인건비의 110%</u></li> <li>- <u>기술료</u>: <u>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%</u></li> </ul>
2.(생략)	2.(현행과 같음)
3.(생략)	3.(현행과 같음)
4.(생략)	4.(현행과 같음)
5.(생략)	5.(현행과 같음)